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고시 별표 개정 수요조사 안내

1. 우리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라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'를 고시하고, 신청기업의 첨단기술 해당여부 확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2.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'는 산업기술보호법, 연구개발특구법, 외국인투자법 등에 인용되고 있으며, 기술보호, 세제, 입지 등 지원대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.
3.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응하여 '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'에 대한 개정수요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자 하오니, 첨부 '산업분야별 개정 수요조사서'에 관련 산업분야의 첨단기술에 대해 기술성숙도를 검토하여 일반화된 기술의 삭제, 신기술의 추가 등 개정수요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조사기간 : 2021.10.7. ~ 2021.10.21.

나. 조사기관 및 자료제출처 : (주)이니씽크 / survey@inithink.co.kr / 070-4190-7916

- 붙임 1. 「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」 별표 개정 수요조사 설명서 1부.
2. 산업분야별 개정 수요조사서 각1부. 끝.

산업통상자원부
장관인



수신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, 산업별 협단체장

공업사무관 전성우 과장 전결 2021.10.5.
이종석

협조자

시행 산업기술정책과-1310 (2021. 10. 5.) 접수

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, (어진동, 산업통상자원부) / http://www.moti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4525 팩스번호 044-203-4743 / jsw0519@korea.kr / 대국민 공개